

## 2003년도 화순군 세입·세출 결산승인의 건 심 사 보 고

### 1. 심사경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4. 6. 화순군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04. 7. 2.

다. 상 정 일 자 : 2004. 7. 2. (1일간)

(제122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회의)

### 2. 제안설명

가. 제안설명 : 재무과장 허길중

나. 결산검사의 근거

○ 지방자치법 제125조

○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

다. 2003년도 결산규모

○ 세입결산 총괄

(단위 : 천원)

구분 회계별	예산현액	징수결정액	수납액	미수납액	미수납처리	
					결손처분	이 월
계	259,202,497	260,174,931	254,972,234	5,202,697	420,545	4,782,152
일반회계	235,204,284	236,303,850	233,476,594	2,827,256	420,545	2,406,711
특별회계	23,998,213	23,871,081	21,495,640	2,375,441	0	2,375,441

○ 세출결산 총괄

(단위 : 천원)

구분 회계별	예산현액	지출액	집행율	이월액	불용액
계	259,202,497	183,053,555	70.6	60,293,978	15,854,964
일반회계	235,204,284	171,530,295	72.9	53,432,441	10,241,548
특별회계	23,998,213	11,523,260	48.0	6,861,537	5,613,416

## ○ 이월사업비 결산

(단위 : 천원)

구분 회계별	계	명시이월	사고이월	계속비
계	60,293,978	43,411,029	8,677,030	8,205,919
일반회계	53,432,441	36,934,826	8,291,696	8,205,919
특별회계	6,861,537	6,476,203	385,334	0

## ○ 불용액 결산

(단위 : 천원)

구분 회계별	계	원 인 별					
		예산집행 사유미발생	예산절감	예산집행 잔액	보조금 집행잔액	예비비	계획 변경취소
계	15,854,964	3,611,467	407,919	9,193,067	150,645	2,127,516	364,350
일반회계	10,241,548	682,195	406,734	6,569,443	132,418	2,090,516	360,242
특별회계	5,613,416	2,929,272	1,185	2,623,624	18,227	37,000	4,108

## 3. 검토결과(전문위원 문 찬 주)

- 지방재정법 제41조에 의거 실시하는 세입·세출의 결산검사에 대한 의회의 심의활동은,
  - 지난 회계연도에 대한 세입·세출 예산집행 상황을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해 봄으로써 의회에서 의결한대로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가, 어떤 행정효과를 거양하였는가 그리고 금후의 행·재정 운영면에서 어떠한 개선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인가를 파악하여,
  -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지방 재정운영과 자주재정에 기여코자 하는 것임.
- 예산은 1회계년도간의 수입과 지출을 예측하여 책정하는 것으로 결산시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보다 정확하고 실천이 가능한 사업계획에 의거 예산을 편성한다면 예산의 낭비요인을 줄일 수 있음은 물론, 보다 효율적인 사업집행이 가능하리라 봄.

- 세입의 경우 징수결정액이 예산액 대비 100.3%이며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8%이지만 미수납액이 5,202,697천원으로 징수 결정액 대비 2%에 이르고 결손처분액도 420,545천원임.
- 세출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70.6%이며 불용액 15,854,964천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6.1%를 차지하고 있음.
- 불용액을 원인별로 살펴볼 때 일반회계 불용액에서는 예산집행 잔액이 6,569,443천원으로 64.1%이고 특별회계에서는 예산 집행사유 미발생이 2,929,272천원 52.2%로 가장 많았다.  
이것은 예산편성이 다소 방만하게 되었거나 사업집행 노력이 미흡하였다고 보여지나 전반적으로 세출이 사업목적에 부합되고 합리적으로 집행되었다고 판단됨.
- 결산검사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차후에는 동일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됨.

#### 4. 질의 답변 요지

“생략”

#### 5. 토론요지

“생략”

#### 6. 위원회 활동

가. 제1차 회의 (2004. 6. 21)

- 위원장, 간사 선출

나. 제2차 회의 (2004. 7. 2)

-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
-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관계공무원과 질의답변

#### 7. 심사결과

“원안 가결”